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169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25,55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58,59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370,47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06,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8. 26.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G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A는 [redacted]구 E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8세대를, 원고 B은 [redacted]구 F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를 신축하여(이하 원고들의 신축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공사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는 신고가액 337,566,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991,970원(= 취득세 9,451,870원 + 지방교육세 540,100원, 이하 '취등세 등'이라 한다, 원고 B 부분도 같다)을, 원고 B은 신고가액 401,597,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887,270원(= 취득세 11,244,720원 + 지방교육세 642,550원, 원고들의 취득세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았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3. 12. 30. G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805,500,0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 원고 A 부분 1,257,000,000원 + 원고 B 부분 1,548,500,000원)에 일괄매각하였고, G 공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8. 5. 10.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G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쟁점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는 취득세 등 9,991,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784,140원을, 원고 B에게는 취득세 등 11,887,2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77,350원(이하 원고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법원이 2016. 11. 10.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일괄매각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건물을 쟁점 조항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6두46212호, 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그제서야 당초 쟁점 조항의 '분양할 목적'에 포함시켰던 일괄매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G공사에게 일괄매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고들의 신청 내용을 신뢰해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쟁점 판결이 선고된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G공사에게 일괄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후 G공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증거들과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쟁점 판결에 따라 기존에는 쟁점 조항의 '분양할 목적'에 포함시켰던 일괄매각의 경우를 제외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그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일괄매각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건물을 쟁점 조항의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서[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52호)이 위와 같은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누1184호)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16두46212호)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은 쟁점 판결 이전부터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들은 그 주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일괄매각 부분에 대하여 세법상의 견해대립 내지는 피고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쟁점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약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고, 피고는 그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들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을 제3호증). 오히려 피고는 쟁점 판결 이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G공사에게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redacted]구 관내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G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자료의 '사전매매이행약정서' 사본을 요청하여 이 사건 약정을 알 수 있었다.

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는 감면신청 사유로 '신축건물 분양(주택건설사업자 신축 공동주택 60㎡ 이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감면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G공사에게 일괄매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은 일괄매각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즉, 피고는 원고들이 일괄매각 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은 탓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해준 것이고, 당초부터 부과되어야 할 이 사건 취득세가 원고들의 행위에 기인하여 부과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이 사건 취득세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끝.